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66

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최보윤·김 건·고동진

이헌승 · 서명옥 · 김선교

안상훈 • 조경태 • 서천호

김상훈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, 기상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 군수·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, 방송사업자 등을 통해 문자, 음성 송신, 인터넷 게시, 방송 등의 방식으로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.

그러나 재난문자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,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신속한 정보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. 이에 따라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주요 전기통신사업자, 방송사업자 등이 재난 예보·경보·통지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여,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

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의2제7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2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 항) 중 "제7항에"를 "제8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12항(종전의 제11항) 중 "제7항과 제8항을"을 "제8항과 제9항을"로 한다.

① 행정안전부장관, 기상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의2(재난 예보·경보체계	제38조의2(재난 예보・경보체계
구축·운영 등) ① ~ ⑥ (생	구축·운영 등) ① ~ ⑥ (현행
략)	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⑦ 행정안전부장관, 기상청장,
	<u>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</u>
	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
	라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
	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
	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장애인
	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
	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
	<u>다.</u>
<u>⑦</u> (생 략)	<u>⑧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
<u>⑧</u> 시·도지사는 <u>제7항에</u> 따른	<u> ⑨</u> <u>제8항에</u>
시・군・구종합계획을 기초로	
시·도 재난 예보·경보체계	
구축 종합계획(이하 이 조에서	
"시·도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	
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	
제출하여야 하며, 행정안전부장	
관은 필요한 경우 시·도지사	
에게 시·도종합계획의 보완을	

요청할 수 있다.

<u>⑨</u> · <u>⑩</u> (생 략)

①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 구청장이 각각 시·도종합계획 과 시·군·구종합계획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<u>제7항과 제8</u> 항을 준용한다.

① (생략)

<u>10</u> •	<u>11)</u>	(현행	제9항	및	제10
항과	같음	-)			
<u>12</u>					
			<u>제</u> 8호	항과	제9
<u>항을</u> -					
<u>্র</u> (ক্	현행	제12항	과 같음	<u>)</u>	